

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12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2.
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공동이용시설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규정(안 제3조·제4조)
- 라. 도시재생위원회 규정(안 제5조)
- 마.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 규정(안 제7조)
- 바.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규정(안 제9조)
- 사. 도시재생사업 지원 규정(안 제10조~제12조)
- 아.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(안 제13조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예산담당 협의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의견미반영(의견서 붙임)
- 라. 입법예고 : 2015. 1. 5. ~ 2015. 1. 26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동이용시설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·경비실,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감시카메라 등 보안·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2.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,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3. 커뮤니티·학습·회의공간, 공연·전시시설, 운동시설,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·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제3조(주민의 참여)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(이하 “주민”이라 한다)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,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.

제4조(주민협의체) ① 주민은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도시재생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장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, 기획예산실장, 문화공보실장, 도시과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·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.

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정원조례」로 정한다.

제7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
 2. 주민협의체 지원
 3. 지역문화재단, 자활센터,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
 4. 빈 점포·상가의 신탁, 공동육아 및 돌봄, 지역축제 등 주민·지역상인들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
 5.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
 6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
-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- ④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및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⑥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7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자료 제출)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사업추진협의회)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, 공공기관, 민간기업, 상공회의소,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,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,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.

③ 사업추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,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,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.

제10조(도시재생사업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원금액의 환수)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 8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2조(용자의 조건) ① 법 제27조에 따른 용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상환기간·이율 및 연체이자·용자의 조건·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용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.

제13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: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$\times (1 + \text{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} \div \text{원래의 대지면적})$ 이내

2. 문화유산 등의 보호, 도시경관, 환경정비,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

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·관리 조례」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

관리번호	2015A울산중구002		
정책명	울산광역시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울산광역시 중구	
	부서명	기획예산실	
	담당자명	이동수	전화번호 052-290-4473
주요 분석평가 내용 (기획예산실)	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		
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는 국토교통부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참여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○ 동 조례는 특히, ‘주민협의체’의 구성 및 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있어 원활한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정책 추진을 지향하고 있으나, 해당 협의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구성 요건이 상위법 또는 관련 국가 제도에 명시된 바 없어 ‘참여와 자치’를 위한 시민 협의체의 책무와 최소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(난립 방지와 공공성 확보) ※ 제2조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→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수정 		
검토의견 반영 결과 (기획예산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도시재생위원회 및 주민 협의체 구성시 검토의견 적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, 향후 점진적으로 성별균형과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○ 제2조 수정반영 		
2015년 1월 21일			
기획예산실장			
분석평가책임관 귀하			

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(의안번호 1124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5. 2. 2.(월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2. 3.(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2. 5.(목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최일식 기획예산실장)

-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공동이용시설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규정(안 제3조·제4조)
- 라. 도시재생위원회 규정(안 제5조)
- 마.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 규정(안 제7조)
- 바.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규정(안 제9조)
- 사. 도시재생사업 지원 규정(안 제10조~제12조)
- 아.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(안 제13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